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72
----------	-------

발의연월일 : 2025. 9. 1.

발 의 자 : 김용태 · 진종오 · 박준태
김재섭 · 송석준 · 서천호
우재준 · 조은희 · 정동만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에서의 심의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및 부시장·부지사를 각각 구성원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교육감 및 부교육감의 의견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시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부교육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 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 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 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 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 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 ----- ----- ----- -----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 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 다), 「지방자치법」-----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6조(실무협의회) ① (생 략)	제6조(실무협의회) ① (현행과 같 음)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3. · 4. (생 략) ③ ~ ⑥ (생 략)	<u>부교육감(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부교육감이 2명 이상인 경 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u>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